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안 번호	1888
----------	------

제출연월일 : 2019. 7. .

발의자 : 방미숙 의원

1. 제안이유

- 「예술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남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지역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안 제5조~제6조)
- 라. 예술인 참여지원 및 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안 제7조~제8조)
- 마. 실태조사 및 지원중단, 시행규칙 (안 제9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예산 수반 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19년 8월 5일 ~ 8월 15일(10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붙임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9. 관련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과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남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 참고자료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명	조례명	제·개정일자	관련부서
경기도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9-01-14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가평군	가평군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8-11-05	경제복지국 문화체육과
구리시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10-31	문화예술과
남양주시	남양주시 지역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조례	2018-10-18	문화정책과
안양시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16-01-06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여주시	여주시 지역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2017-05-18	안전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평택시	평택시 예술인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12-19	기획조정실 문화예술과